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상현 · 임재현

연구진

연구책임

- 한상헌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임재현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목 차

제 1 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 2 장 지역 예술인 복지의 개념과 범주	8
제1절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의 발전	8
1.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념적 논의와 제도화	8
2. 예술인 복지 정책의 특성	9
제2절 지역 예술인의 개념과 범주	11
1. 예술인의 개념	11
2. 지역예술인 현황	13
제 3 장 지역 예술인의 처우에 관한 조사 결과	17
제1절 조사개요	17
1. 조사 목적	17
2. 조사 방법	17
제2절 조사결과	18
1. 일반적 특성	18
2. 직장 및 직업	23
3. 문화예술 활동과 정신건강	30

4. 문화예술 활동 여건	34
5. 문화예술 정책 및 복지증진	42
6. 생활수준 및 삶의 만족도	50
제 4 장 예술인 복지 정책 현황 및 요구	57
제1절 예술인 복지 정책의 현황	57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 사업 현황	57
2.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 사업의 성과와 한계	64
제2절 대전 지역의 예술인 복지 정책	65
1. 대전 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정책	65
2. 대전시 복지정책에 대한 예술인들의 요구수준	69
제 5 장 지역 예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73
1.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	73
2.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	74
3. 지역예술인 복지 정책의 과제	75
참 고 문 헌	78
부록 1. 조사 설문지	80
부록 2.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	92
부록 3.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안)	99

〈표 목차〉

〈표 2-1〉 국내외 예술인 복지제도 현황(출처: 유가원(2013)에서 재인용)	10
〈표 2-2〉 예술 소득에 따른 기준	11
〈표 2-3〉 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	12
〈표 2-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	13
〈표 2-5〉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 실적에 따른 기준	13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18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2	19
〈표 3-3〉 문화예술 활동 분야	20
〈표 3-4〉 문화예술 활동 수행 지역	21
〈표 3-5〉 문화예술 활동 관련 학문전공과 최종학력	23
〈표 3-6〉 직업	24
〈표 3-7〉 취업상태	26
〈표 3-8〉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27
〈표 3-9〉 사회보험 가입형태	28
〈표 3-10〉 예술인 사회보험	29
〈표 3-11〉 문화예술 활동	30
〈표 3-12〉 전문성 인식수준	31
〈표 3-13〉 스트레스 수준	32
〈표 3-14〉 스트레스 요인 (복수응답)	33
〈표 3-15〉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	34
〈표 3-16〉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 기회정도	36
〈표 3-17〉 문화예술 활동의 외부적 규제수준	37
〈표 3-1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정도	38
〈표 3-1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정도	39
〈표 3-20〉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한계	41
〈표 3-21〉 공공 및 민간영역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여부	42

<표 3-22> 대전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역점 정책 순위	46
<표 3-23> 대전시 문화예술 정책 만족도	47
<표 3-24> 대전시의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	49
<표 3-25> 생활수준 (단위: 만원)	50
<표 3-26> 삶의 만족도	53
<표 3-27> 삶의 만족도 평균	54
<표 4-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60
<표 4-2>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62
<표 4-3>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내용	63
<표 4-4>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66
<표 4-5> 차세대 artiStar 지원 자격	66
<표 4-6> 차세대 artiStar 지원 규모	67

〈그림 목차〉

〈그림 3-1〉 거주지역	21
〈그림 3-2〉 문화예술 활동 수행지역	22
〈그림 3-3〉 전국 문화예술 활동 관련 투자시간(주간)	31
〈그림 3-4〉 스트레스 요인	33
〈그림 3-5〉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	35
〈그림 3-6〉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 기회정도	36
〈그림 3-7〉 문화예술 활동의 외부적 규제수준	37
〈그림 3-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정도	39
〈그림 3-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정도	40
〈그림 3-10〉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한계	41
〈그림 3-11〉 공공영역 지원여부	43
〈그림 3-12〉 민간영역 지원여부	43
〈그림 3-13〉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사업	49
〈그림 3-14〉 2012년 전국 문화예술가 가구의 월평균 수입	51
〈그림 3-15〉 2012년 전국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51
〈그림 3-16〉 2012년 전국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	52
〈그림 3-17〉 2012년 전국 문화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	52
〈그림 4-1〉 예술활동증명 절차(예술활동증명 심의 추진 체계)	58
〈그림 4-2〉 예술인 신문고 내용 및 지원 절차	61
〈그림 5-1〉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분석	73
〈그림 5-2〉 Cross-Swot 분석을 통한 주요 추진전략 도출	74
〈그림 5-3〉 지역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75
〈그림 5-4〉 협업공간 ‘사이’ 내부 모습(충남 천안시 소재)	77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문화 활동의 중심 주체인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줄곧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 대부분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생활환경이 지적되어 오던 중, 2011년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은 결국 그 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예술인 복지정책들이 시행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¹⁾

「예술인 복지법」은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탓에 지역 예술가를 위한 배려는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 지역 예술인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활동 기회도 적고, 실제 수입도 낮아 오히려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복지 정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김나뵈, 2013).

한편 사회 곳곳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직업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비롯해 많은 전문 직업군에 대한 복지 증진 방안이 시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의 경우는 특별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수준 향상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1) 2011년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씨가 생활고를 못 이겨 젊은 나이로 병사하였고, 이를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이 법은 일명 ‘최보은법’이라 불리게 된다.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2. 연구 목적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안정화되면 문화예술 활동 결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은 자연히 뒤따를 것이다. 본 연구는 결국 대전시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증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번 한 차례의 조사가 지역 예술인의 요청에 꼭 맞는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지원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세워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특히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미처 아우르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일정한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다른 지역에 비취 대전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와 요구수준을 가늠해 봄으로써 향후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에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문화예술인의 범주는 여러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개념적으로도 쉽게 통일되기는 어렵다. 본 연구가 ‘직능별 복지 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 포함될 수 있고, 한 편으로 문화예술인 처우개선은 창작지원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의 창작지원 사업에서 사용했던 11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당연히 현재 활동 중인 전업 문화예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대중문화 종사자와 종합예술의 스태프진도 포함되지만 딜레탕뜨(dilettante)적 문화애호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과, 대전 근교에 거주하되 주요 문화예술 활동 지역이 대전인 경우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 방법은 문헌자료 조사와 양적,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중 가장 중점적인 연구 방법은 대전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서베이 조사이다. 분야와 연령대, 활동경력을 고려하여 샘플링된 표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의 수요를 보다 깊게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종사자와 전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직접 살펴보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환경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하였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문헌조사 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실태를 알아보았다.

제 2 장

지역 예술인 복지의 개념과 범주

제1절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의 발전

제2절 지역예술인의 개념과 범주

제 2 장 지역 예술인 복지의 개념과 범주

제1절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의 발전

1.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념적 논의와 제도화

예술인 복지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0년 개최된 유네스코 21차 정기 총회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채택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s)’에서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유네스코 회원국이었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까지도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공약이 제시되었을 뿐 뚜렷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야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18일부로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의 목적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러한 목적은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었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02년에 대선 공약으로 예술인 복지조합 설립이 언급되었고, 2009년에도 예술인 복지법안이 발의되어 예술인 복지 법제화가 공식화 되었는데, 이 때 주요 골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예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예술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편입 등이었다(최정민·최성락, 2013). 최고은씨의 죽음으로 인해 전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 가운데 예술인복지기금 설치와 고용보험 부분은 제외되고, 예술인복지재단 설치와 산재보험만 포함된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²⁾

2. 예술인 복지 정책의 특성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법률적으로 예술인복지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예술인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주요한 정책분야는 예술인취업지원교육과 창작지원금 지원이 근간을 이룬다.

일찍부터 예술인 복지제도가 정착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는 여러 차이점과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해외의 예술인 복지 관련 제도는 크게 프랑스·독일식, 북유럽식, 영·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동연, 2013). 프랑스·독일은 예술인에게 별도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은 예술가의 복지 제도를 특별하게 제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잘 정비된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 등 영미권에서는 예술인 연금제도 등 부분적 복지 제도를 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는 기금 확보와 조합 설립의 가능성이 낮고 성과에 기반한 선택적 복지의 흐름이다.³⁾

2)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던 당시 문화관광부는 35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70억 원만이 통과되었다.

3) 예술인 복지 정책도 다른 분야의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보편적복지 vs 선별적 복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마치 프로젝트성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전반적 복지수준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선별적 복지에 기반한 현재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허은광, 2012).

〈표 2-1〉 국내외 예술인 복지제도 현황(출처: 유가원(2013)에서 재인용)

제도	기관	재원운영
프랑스	예술인의 집,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 문화예술종사자 사회보장그룹 ‘오디앙스’ 예술의 장르, 업무 특성에 따라 나뉘어 행정을 담당.	노사분담
독일	예술가사회보험법(KSV). 예술위원회산하기관Aosciana 에서 30세 이상 예술인에 한해 연금제도 운영.	노.사.정3자간분담 (본인50%,사용자3 0%, 연방20%)
네덜 란드	예술가 최저생활보장제도 (WWIK)운영	정부, 지방자치단체
영국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간섭은 피함.	의회를 예산을 예술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미국	문화예술은 사적인 영역으로 포함.	비영리적 성격의 미국연방예술기금(NEA), 예술인민간보험(SAGP)
캐나다	예술가지위법 캐나다위원회법	캐나다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캐나다위원회.
일본	예능인연금공제제도	사단법인 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한국	예술인복지법 예술인산재보험 예술인취업지원교육	재단법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지원교육위탁기관-재)안 양문화재단(경기컨소시엄주관 기관), 재)대전문화재단,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제2절 지역 예술인의 개념과 범주

1. 예술인의 개념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문화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였다. ‘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여러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예술인복지법 제정과정에서도 예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⁴⁾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 규정한다. 예술인 복지법의 추상적인 개념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부연 설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술인을 여러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표 2-2> 예술 소득에 따른 기준

- | |
|---|
| 1.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최근 3년간 36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간 120만 원 이상인 자 |
| 2.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수입이 전체 직업활동 수입의 50퍼센트를 넘는 자 |

4) 예술인에 대한 개념규정에서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것인가는 특히 첨예한 논쟁지점이었다. 예술인이 근로자로 규정되게 되면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상 가입자 및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자유전문직이 많은 예술직의 특성상 이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보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것이다(최정민·최성락, 2013).

<표 2-3> 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

문학 (5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사진 건축 (5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3.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3. 1장 이상의 음반을 출판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4.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5.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 (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였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2.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였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출판한 실적이 있는 자 3.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4.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드라마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5.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기술 기획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전시, 영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표 2-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

저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저작자’로서 동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예술 작품 저작자 : 소설가, 시인, 평론가, 극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화가, 조각가, 만화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의 ‘실연자’로서 동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실연자 : 배우, 연주가, 성악가, 무용수, 가수, 모델, 연출가 등

<표 2-5>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 실적에 따른 기준

국고	1. 최근 3년간 국고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방비	1. 최근 3년간 지방비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기금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공공 기금을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역예술인 현황

자유전문직이 많은 문화예술인의 특성상 대전지역에 문화예술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문화관광부에서 3년 주기로 조사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도 전국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으로 표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으로 표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대전시의 경우 예총 대전지부는 10개 예술 분야 총 5,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 민예총 대전충남지부는 6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가운데 4대 보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당수는 가입여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이는데, 대전 지역의 예술가들은 더욱 가입률이 저조하다. 예총과 민예총 회원들 가운데 ‘예술 활동증명’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하다.

제 3 장

지역 예술인의 처우에 관한 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 3 장 지역 예술인의 처우에 관한 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증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전지역에 거주하거나 대전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대전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현황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목적이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대전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지원 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2. 조사 방법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전문화재단과 예총 및 민예총으로부터 설문조사자 명단을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였다. 표본 추출된 조사대상자를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151명이 조사되었으며, 부실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1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5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항목은 직업 및 직장, 사회보험, 문화예술 활동과 정신건강, 문화예술 활동여건, 문화예술 정책 및 복지증진, 생활수준과 삶의 만족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제2절 조사결과

1.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5명(57.4%)이었으며, 여성은 63명(42.6%)이었다.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76명(5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졸업자가 37명(25.0%)이었으며, 대학원 수료자 14명(9.5%), 대학생이 9명(6.1%), 고졸이 8명(5.4%), 무학이 3명(2.0%), 초등학교 졸업이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최소 24세부터 최대 76세까지였으며, 평균 42.64세로 나타났다.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85	57.4		
	여성	63	42.6		
	합계	148	100.0		
최종학력	무학	3	2.0		
	초졸	1	0.7		
	고졸	8	5.4		
	대학생	9	6.1		
	대졸	76	51.4		
	대학원 수료	14	9.5		
	석 또는 박사 졸업	37	25.0		
	합계	148	100.0		
	연령 (만 나이)	N	최소	최대	평균
148		24	76	42.64	11.71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서구가 46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구가 39명(26.4%), 유성구 25명(16.9%), 동구 22명(14.9%), 대덕구 11명(7.4%), 대전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5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혼인상태는 결혼이 81명(5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 57명(38.5%) 이혼 6명(4.1%), 사별 2명(1.4%), 사실혼과 기타가 각각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구 수입형태는 맞벌이가 49명(59.8%), 남성 홀벌이가 24명(29.3%), 본인·배우자 이외의 가족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는 8명(9.8%), 여성 홀벌이 1명(1.2%)이었다.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빈도	퍼센트
거주지	동구	22	14.9
	중구	39	26.4
	서구	46	31.1
	유성구	25	16.9
	대덕구	11	7.4
	대전시 외	5	3.4
	합계	148	100.0
혼인 상태	미혼	57	38.5
	결혼	81	54.7
	이혼	6	4.1
	사별	2	1.4
	사실혼	1	0.7
	기타	1	0.7
	합계	148	100.0
가구수입형태	맞벌이	49	59.8
	남성 홀벌이	24	29.3
	여성 홀벌이	1	1.2
	가족수입	8	9.8
	합계	82	100.0

2) 문화예술 활동 특성

응답자들이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연극분야가 30명(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술분야가 28명(18.9%)으로 많았으며, 음악분야 25명(16.9%), 문학분야 14명(9.5%), 국악분야 13명(8.8%), 사진분야 11명(7.4%), 영화분야와 연예분야 각각 8명(5.4%), 무용분야 6명(4.1%), 만화분야 3명(2.0%), 건축분야 2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문화예술 활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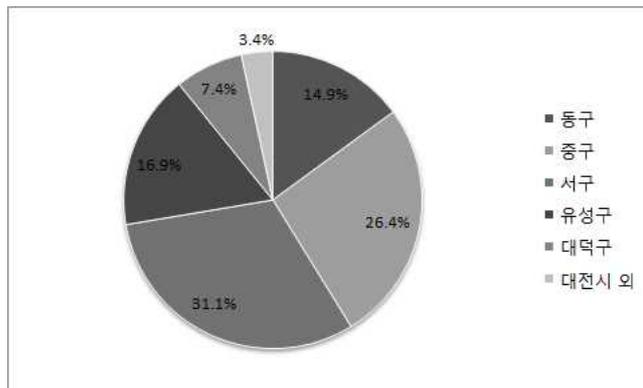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 활동분야	문학	14	9.5
	미술	28	18.9
	사진	11	7.4
	건축	2	1.4
	국악	13	8.8
	음악	25	16.9
	연극	30	20.3
	무용	6	4.1
	영화	8	5.4
	연예	8	5.4
	만화	3	2.0
	합계	148	100.0

응답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는 중구가 68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가 36명(24.3%)으로 많았으며, 유성구 22명(14.9%), 동구 11명(7.4%), 대덕구 7명(4.7%), 대전시 외의 지역이 4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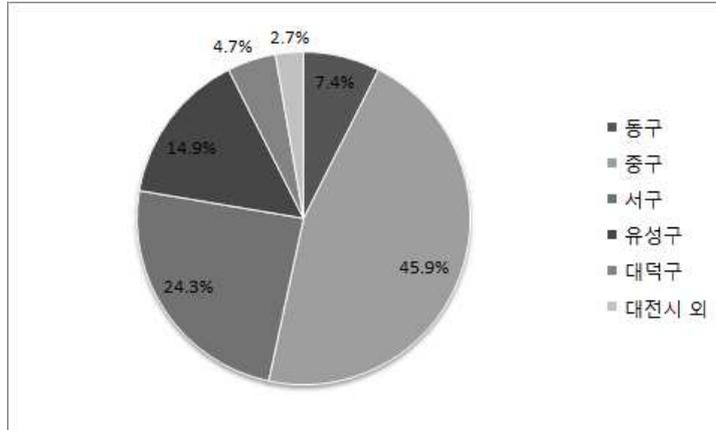
〈표 3-4〉 문화예술 활동 수행 지역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 활동 수행지역	동구	11	7.4
	중구	68	45.9
	서구	36	24.3
	유성구	22	14.9
	대덕구	7	4.7
	대전시 외	4	2.7
	합계	148	100.0

문화예술 활동 수행지역을 응답자들의 거주지역과 비교해보면, 응답자들은 서구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서구에 못지않게 상당수의 문화예술인들이 중구에서도 거주하였으며, 유성구와 동구에서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덕구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지역은 중구가 절반에 가까웠으며, 거주지역으로 가장 많았던 서구는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유성구는 거주지역과 유사하였으나 동구나 대덕구는 문화예술 활동 비율이 거주지역에 비해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주로 서구에서 거주하면서 대체로 중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거주지역



〈그림 3-2〉 문화예술 활동 수행지역

응답자들의 문화예술 관련 학문 전공은 대학교(대학원)에서만 전공한 경우가 66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대학원) 모두에서 전공한 경우는 35명(23.6%)으로 많았으며, 문화예술 관련 학문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경우 25명(16.9%), 정규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민간사설기관에서 관련내용을 공부한 경우 21명(14.2%), 고등학교에서만 전공한 경우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과 최종학력의 일치 정도는 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55명(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39명(26.5%)으로 많았으며, 전혀 불일치하는 경우 26명(17.7%), 반반인 경우 17명(11.6%), 대체로 불일치하는 경우 7명(4.8%), 비해당(무직/은퇴)의 경우 3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문화예술 활동과 최종학력과의 일치정도에서는 전국이 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체로 일치가 21.8%, 전혀 불일치가 21.1%, 반반이 9.5%, 대체로 불일치가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시의 조사결과와 순서에서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전적으로 일치의 경우와 전혀 불일치, 대체로 불일치의 경우에서 대전시가 조금 낮게 나타났고, 대체로 일치와 반반의 경우는 대전시에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과 최종학력과의 일치정도는 전국조사 자료나

대전시의 조사 자료가 큰 차이가 없으며, 문화예술 활동과 최종학력이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는 경우가 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전시가 전국보다 더 문화예술 활동과 최종학력의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5> 문화예술 활동 관련 학문전공과 최종학력

		빈도	퍼센트	※ 2012년 전국(%)
문화예술 관련 학문전공	고등학교에서만 전공	1	0.7	
	대학교(대학원)에서만 전공	66	44.6	
	고등학교와 대학교(대학원) 모두에서 전공	35	23.6	
	민간사설기관에서 관련 학문을 공부함	21	14.2	
	문화예술 관련 학문을 전혀 전공하지 않음	25	16.9	
	합계	148	100.0	
문화예술 활동과 최종학력의 일치 정도	전적으로 일치	55	37.4	40.3
	대체로 일치	39	26.5	21.8
	반반	17	11.6	9.5
	대체로 불일치	7	4.8	7.3
	전혀 불일치	26	17.7	21.1
	비해당(무직/은퇴)	3	2.0	0
	합계	147	100.0	100.0

2. 직장 및 직업

1) 직업 및 취업상태

응답자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만을 하는 전업 예술가인지를 조사한 결과 111명(75.0%)이 전업 예술가로 조사되었다. 전업 예술가가 아닌 경우 직업으로는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언론인, 프로그래머 등)이 12명(32.4%)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 및 판매직과 기타가 각각 8명(21.6%)이었으며, 고위관리직(기업체 경영주, 기업체간부, 고위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이 3명(8.1%),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전화상담원 등)과 단순노무직(환경미화원, 아파트관리원, 노무자 등)이 각각 2명(5.4%), 준전문직(건축도안사, 컴퓨터보조원, 임상병리사, 준교사, 운동선수 등)과 기능직(광원, 건축관련 기능직, 정비원, 세공원 등)이 각각 1명(2.7%)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기획전문가, 개인사업, 은퇴, 학원운영, 학생 등으로 나타났다.

<표 3-6> 직업

		빈도	퍼센트
전업예술가 여부	예	111	75.0
	아니오	37	25.0
	합계	148	100.0
직업종류	고위관리직	3	8.1
	전문직	12	32.4
	준전문직	1	2.7
	사무직	2	5.4
	서비스/판매직	8	21.6
	기능직	1	2.7
	단순노무직	2	5.4
	기타	8	21.6
	합계	37	100.0

응답자들의 취업상태는 자유전문직(프로랜서)이 86명(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주인 경우도 23명(15.5%)으로 많았으며, 정규 피고용직(정규직)인 경우 19명(12.8%), 임시 피고용직(계약직)인 경우 13명(8.8%), 기타 7명(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분야와의 일치하는지에 대해

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 중 현재 직업과 문화예술 활동이 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70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50명(33.8%)으로 나타나서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 직업과 문화예술 활동 분야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반반인 경우가 9명(6.1%), 비해당(무직/은퇴)이 8명(5.4%), 대체로 불일치하는 경우 6명(4.1%), 전혀 불일치하는 경우 5명(3.4%)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대해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전국은 기타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유전문직(프리랜서)가 20.7%, 정규 피고용직(정규직)이 18.3%, 고용주가 16.2%, 임시 피고용직(계약직)이 12.8%로 나타났다. 자유전문직(프리랜서)은 대전시가 상당히 높았으나 정규 피고용직과 임시 피고용직, 고용주의 경우에는 전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은 기타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결과 때문으로 분석되며, 대전시와 비교해서 고용주보다 정규직이 많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과 문화예술 활동분야의 일치정도에서는 전국은 전적으로 일치가 5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일치가 24.6%, 전혀 불일치가 11.5%, 반반이 7.3%, 대체로 불일치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치정도의 순서는 대전시와 대체로 일치하나 전혀 불일치의 경우가 전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차이를 보였다. 전적으로 일치와 전혀 불일치, 반반의 경우가 대전시 보다 더 높았으며, 대체로 일치와 대체로 불일치의 경우가 대전시 보다 낮았다. 다만 직업과 문화예술 활동의 일치정도는 대전시나 전국의 경우 동일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취업상태

		빈도	퍼센트	※2012년 전국(%)
취업상태	고용주	23	15.5	16.2
	자유전문직(프리랜서)	86	58.1	20.7
	정규 피고용직(정규직)	19	12.8	18.3
	임시 피고용직(계약직)	13	8.8	12.8
	기타	7	4.7	32.0
	합계	148	100.0	100.0
직업과 문화예술 활동분야 일치정도	전적으로 일치	70	47.3	51.4
	대체로 일치	50	33.8	24.6
	반반	9	6.1	7.3
	대체로 불일치	6	4.1	3.9
	전혀 불일치	5	3.4	11.5
	비해당(무직/은퇴)	8	5.4	0
	합계	148	100.0	98.7

2)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대전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것을 조사하였다.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가 69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31명(20.9%)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자들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고용되지 않았거나, 고용주인 경우, 자유전문직(프리랜서)으로 문화예술을 하는 경우가 48명(32.4%)으로 나타났다.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잘 몰라서가 31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이 23명(33.3%)으로 많았다. 그 외 직장에서 일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7명(10.1%), 기타 6명(8.7%), 일반 고용계약서와

차이가 없어 도움이 되지 않아서 2명(2.9%)으로 나타났다.

<표 3-8>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빈도	퍼센트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작성했음	31	20.9
	작성하지 않았음	69	46.6
	해당 없음 (문화예술 활동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 자유전문직 등)	48	32.4
	합계	148	100.0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이유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잘 몰라서	31	44.9
	일반 고용계약서 작성하기 때문에	7	10.1
	원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23	33.3
	일반 고용계약서와 차이가 없어 도움이 되지 않아서	2	2.9
	기타	6	8.7
	합계	69	100.0

3) 사회보험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의 가입형태는 지역가입자가 56명(37.8%),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족의 보험 활용 등) 54명(36.5%), 직장가입자 38명(25.7%)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형태는 납부유예(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어서 등)인 경우가 57명(38.5%), 사업장가입자 43명(29.1%), 지역가입자 38명(25.7%), 특수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6명(4.1%), 연금수급자 4명(2.7%)으로 나타났다.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형태는 가입되지 있지 않은 경우가 100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된 경우는 38명(25.7%)으로 나타났으며,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상태를 잘 모른다는 응답도 10명(6.8%)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형태를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전국은 직장가입자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가입자가 35.4%, 피부양자가 2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보다 직장가입자가 더 많았고,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는 더 적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국은 사업장가입자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납부유예(미가입)가 33.2%, 지역가입자가 24.9%, 연금수급자가 4.1%, 특수직역이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은 대전시보다 사업장가입자가 더 많았으며, 연금수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유예와 지역가입자, 특수직역 연금은 더 적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대전시는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나 전국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율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와 유사하게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입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와 비교하면 전국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9> 사회보험 가입형태

		빈도	퍼센트	※ 2012년 전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8	25.7	36.1
	지역가입자	56	37.8	35.4
	피부양자	54	36.5	26.4
	합계	148	100.0	97.9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43	29.1	34.5
	지역가입자	38	25.7	24.9
	특수직역 연금	6	4.1	3.3
	연금수급자	4	2.7	4.1
	납부유예(미가입)	57	38.5	33.2
	합계	148	100.0	100.0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됨	38	25.7	고용:30.5 산재:27.9
	가입되어 있지 않음	100	67.6	고용:57.4 산재:56.6
	잘 모름	10	6.8	고용:12.1 산재:15.5
	합계	148	100.0	고용:100 산재:100

4) 예술인 사회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으로 가입된 경우는 3명(7.9%)이었으며, 일반 직장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34명(8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산재보험 가입형태를 잘 모르는 경우도 1명(2.6%)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들 중에서 예술인 사회보험을 지원 받는 경우는 1명(2.0%)이었으며, 37명(75.5%)은 예술인 사회보험을 지원받지 않았으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11명(22.4%)이나 되었다. 예술인 사회보험을 지원 받지 않은 이유로는 예술인 사회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23명(6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서 9명(24.3%),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아서 3명(8.1%), 본인이 예술인 활동증명을 하지 못해서 2명(5.4%)으로 나타났다.

<표 3-10> 예술인 사회보험

		빈도	퍼센트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여부	예술인 산재보험	3	7.9
	일반 직장의 산재보험	34	89.5
	잘 모름	1	2.6
	합계	38	100.0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여부	지원받고 있음	1	2.0
	지원받고 있지 않음	37	75.5
	잘 모름	11	22.4
	합계	49	100.0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못 받는 이유	예술인 사회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23	62.2
	본인이 예술인 활동증명을 하지 못해서	2	5.4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해도 되지 않아서	3	8.1
	문화예술 활동으로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서	9	24.3
	합계	37	100.0

3. 문화예술 활동과 정신건강

1) 문화예술 활동경력 및 활동시간

응답자들의 문화예술 활동 경력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600개월(50년)까지로 평균 166.77(13.9년)개월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 관련 모든 활동, 창작 준비 및 관련단체 활동 포함)에 투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에서 최대 16시간으로 평균 5.88시간을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평균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12시간으로 평균 35.49시간을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문화예술 활동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 활동경력 기간 (개월)	148	6	600	166.77	109.72
문화예술 활동 투여시간 하루 평균 (시간)	147	1	16	5.88	3.28
문화예술 활동 투여시간 주간 평균 (시간)	148	2	112	35.49	21.22

전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투여시간의 주간시간을 비교하면 전국은 5시간 이하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1시간 이상이 22.7%, 6~10시간이 18.9%, 11~20시간이 16.7%, 21~30시간이 12.2%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주간 평균 35.49시간에 비하면 전국은 문화예술 활동의 투여시간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전국 문화예술 활동 관련 투자시간(주간)



2) 문화예술 활동분야의 전문성 인식수준

응답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인식 수준을 1점(매우 낮음)에서 7점(매우 높음)의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본인의 전문성 수준은 최소 2점에서 최대 7점까지였으며, 평균 5.43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우리사회가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수준은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까지였으며, 평균 4.44점으로 보통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전문성 인식수준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분야 전문성에 대한 본인의 인정 수준	148	2	7	5.43	1.22
문화예술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정 수준	148	1	7	4.44	1.43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스트레스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1점(매우 적음)에서 7점(매우 많음)의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스트레스 수준은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까지로 평균 4.36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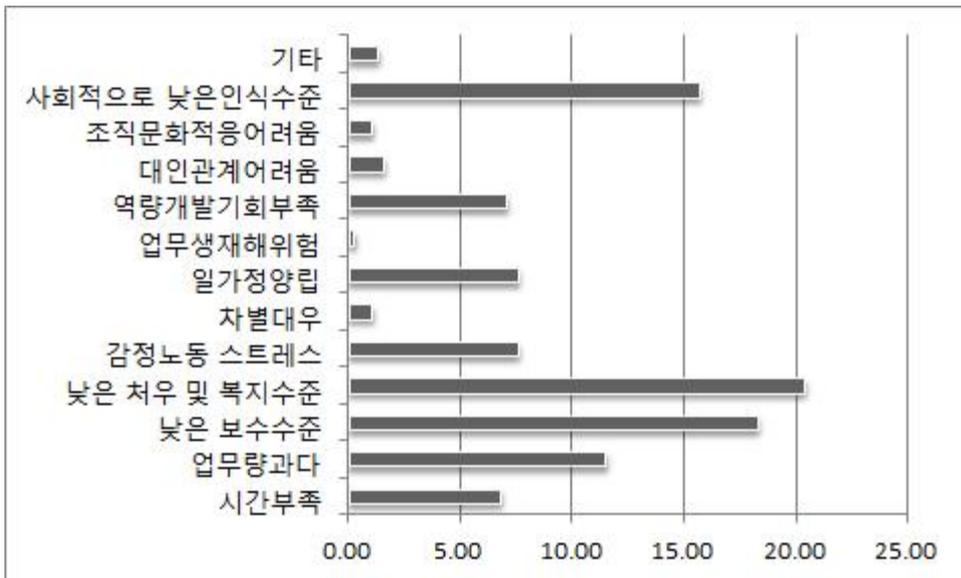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이 3개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수준이 78명(20.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이 70명(18.28%),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이 60명(15.67%)으로 상당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행정 및 서류처리 등의 업무량 과다가 44명(11.49%),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일·가정양립문제(자녀 보육 및 교육, 가사 등)가 각각 29명(7.57%), 역량개발의 기회부족이 27명(1.05%),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이 26명(6.79%)으로 나타났다. 그 외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6명(1.57%), 차별대우(성, 지역, 학력, 장애 등)와 조직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각각 4명, 업무상 재해 위험이 1명, 기타가 5명으로 나타났다.

〈표 3-13〉 스트레스 수준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스트레스 수준	148	1	7	4.36	1.79

〈표 3-14〉 스트레스 요인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26	6.79
행정 및 서류처리 등의 업무량 과다	44	11.49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	70	18.28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수준	78	20.37
감정노동 스트레스	29	7.57
차별대우(성, 지역, 학력, 장애 등)	4	1.04
일·가정양립문제(자녀 보육 및 교육, 가사 등)	29	7.57
업무상 재해 위험	1	0.26
역량개발의 기회부족	27	7.05
대인관계 어려움	6	1.57
조직문화 적응의 어려움	4	1.04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	60	15.67
기타	5	1.31
	383	100.00



〈그림 3-4〉 스트레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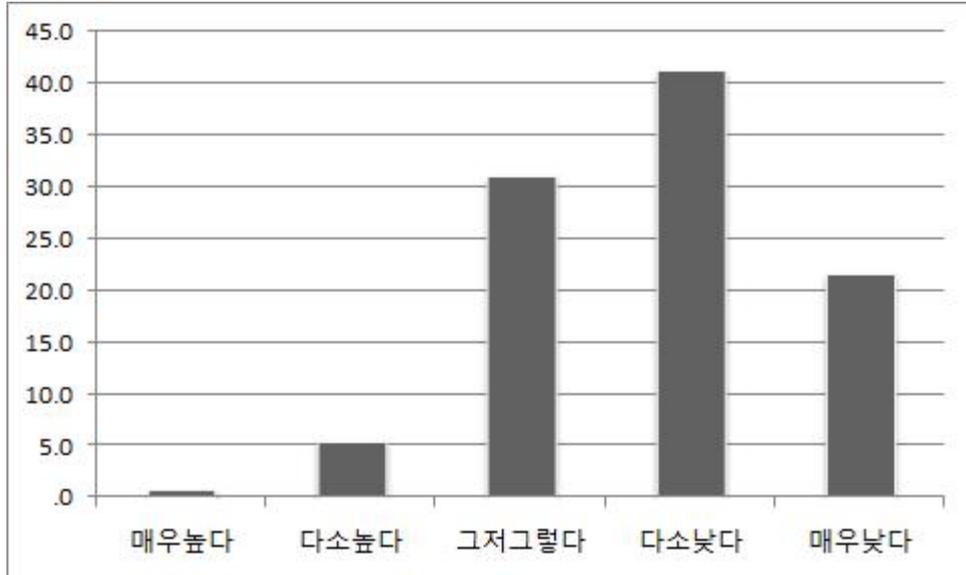
4. 문화예술 활동 여건

문화예술 활동 여건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다소 낮다가 61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46명(31.1%), 매우 낮다가 32명(21.6%), 다소 높다가 8명(5.4%), 매우 높다가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에서 전국은 그저 그렇다가 3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낮다가 29.3%, 매우 낮다가 17.2%, 다소 높다가 15.5%, 매우 높다가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비교하면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평가와 인식수준이 동일하게 낮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대전시보다 적고, 인식수준이 높다는 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

		빈도	퍼센트	※2012년 전국(%)
문화예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 및 인식수준	매우 높다	1	0.7	1.9
	다소 높다	8	5.4	15.5
	그저 그렇다	46	31.1	36.1
	다소 낮다	61	41.2	29.3
	매우 낮다	32	21.6	17.2
	합계	148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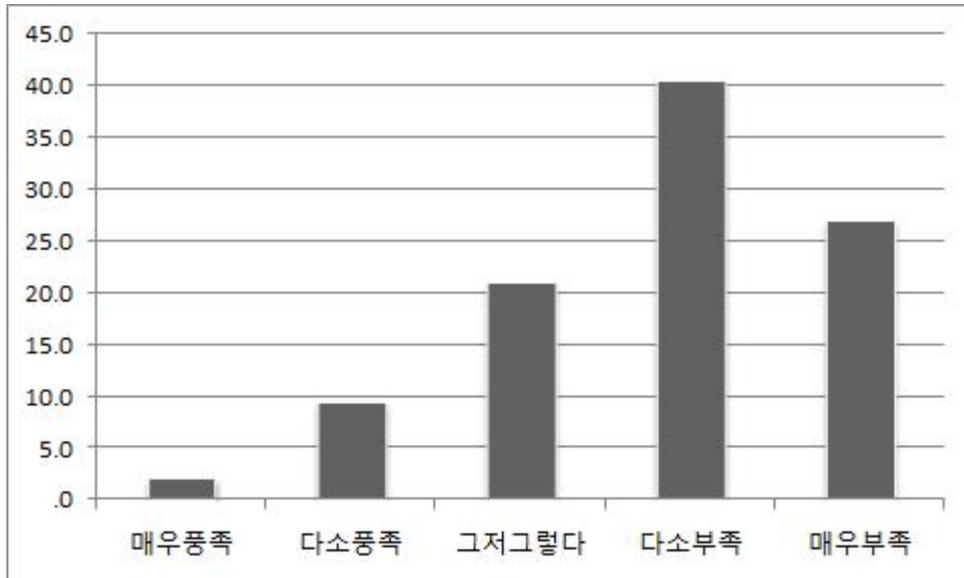
<그림 3-5>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

문화예술인에게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다소 부족하다가 60명(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부족하다가 40명(27.0%), 그저 그렇다가 31명(20.9%), 다소 풍족하다가 14명(9.5%), 매우 풍족하다가 3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 기회정도의 경우 전국은 다소 부족하다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부족하다가 26.4%, 그저 그렇다가 25.2%, 다소 풍족하다가 6.7%, 매우 풍족하다가 1.0%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비교해도 약간의 비율 차이만 있고, 순서는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났다. 창작발표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국이나 대전시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6〉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 기회정도

		빈도	퍼센트	※2012년 전국(%)
문화예술인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의 기회 정도	매우 풍족하다	3	2.0	1.0
	다소 풍족하다	14	9.5	6.7
	그저 그렇다	31	20.9	25.2
	다소 부족하다	60	40.5	40.7
	매우 부족하다	40	27.0	26.4
	합계	148	100.0	100.0



〈그림 3-6〉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 기회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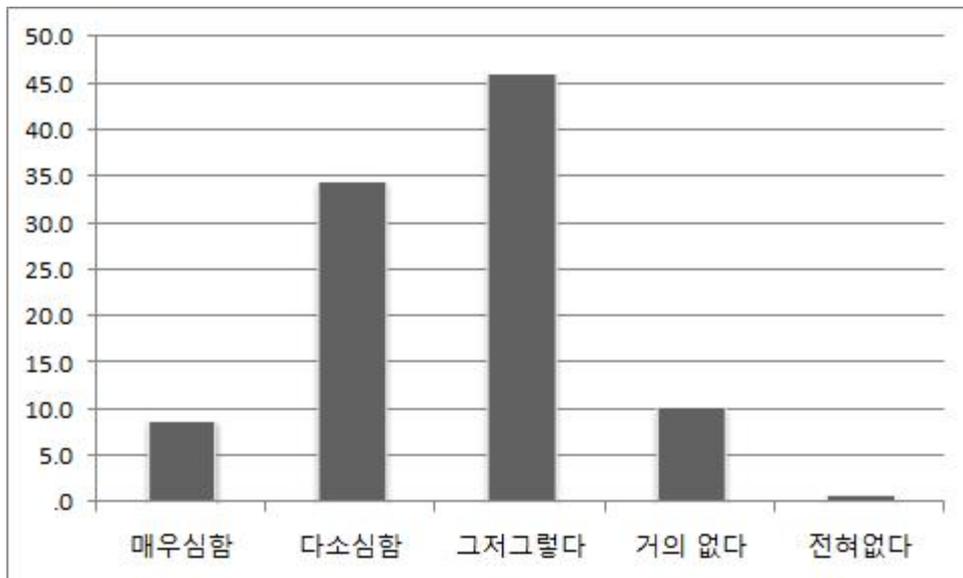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외부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가 68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심하다가 51명(34.5%), 거의 없다가 15명(10.1%), 매우 심하다가 13명(8.8%), 전혀 없다가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의 외부적 규제수준에 대한 2012년도 문화예술실태조사와 비교하

면, 전국은 그저 그렇다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심각하다가 25.7%, 거의 없다가 22.5%, 매우 심하다가 6.0%, 전혀 없다가 2.7%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의 경우 전국은 대전시와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지만, 규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대전은 규제가 심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아서 대전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외부규제가 더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17> 문화예술 활동의 외부적 규제수준

		빈도	퍼센트	※2012년 전국(%)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외부적인 규제수준	매우 심하다	13	8.8	6.0
	다소 심하다	51	34.5	25.7
	그저 그렇다	68	45.9	43.1
	거의 없다	15	10.1	22.5
	전혀 없다	1	0.7	2.7
	합계	148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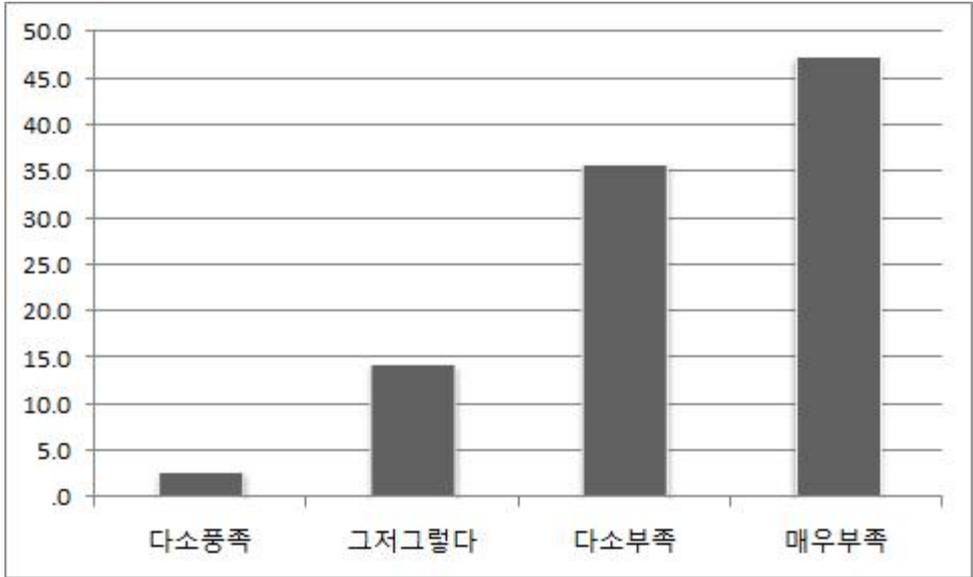
<그림 3-7> 문화예술 활동의 외부적 규제수준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가 70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부족하다가 53명(35.8%), 그저 그렇다가 21명(14.2%), 다소 풍족하다가 4명(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풍족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정도를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전국은 매우 부족하다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부족하다가 33.7%, 그저 그렇다가 12.3%, 다소 풍족하다가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대전시와 일부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동일한 순서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전국이나 대전시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정도

		빈도	퍼센트	※2012년 전국(%)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정도	다소 풍족하다	4	2.7	3.0
	그저 그렇다	21	14.2	12.3
	다소 부족하다	53	35.8	33.7
	매우 부족하다	70	47.3	51.0
	합계	148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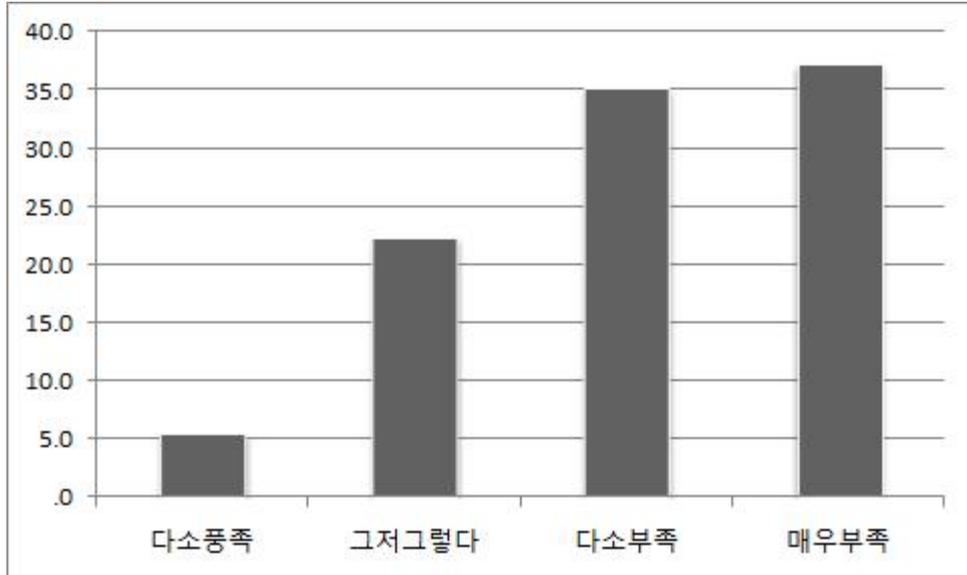


〈그림 3-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가 55명(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부족하다가 52명(35.1%), 그저 그렇다가 33명(22.3%), 다소 풍족하다가 8명(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풍족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3-1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정도

	빈도	퍼센트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정도	다소 풍족하다	8 5.4
	그저 그렇다	33 22.3
	다소 부족하다	52 35.1
	매우 부족하다	55 37.2
	합계	1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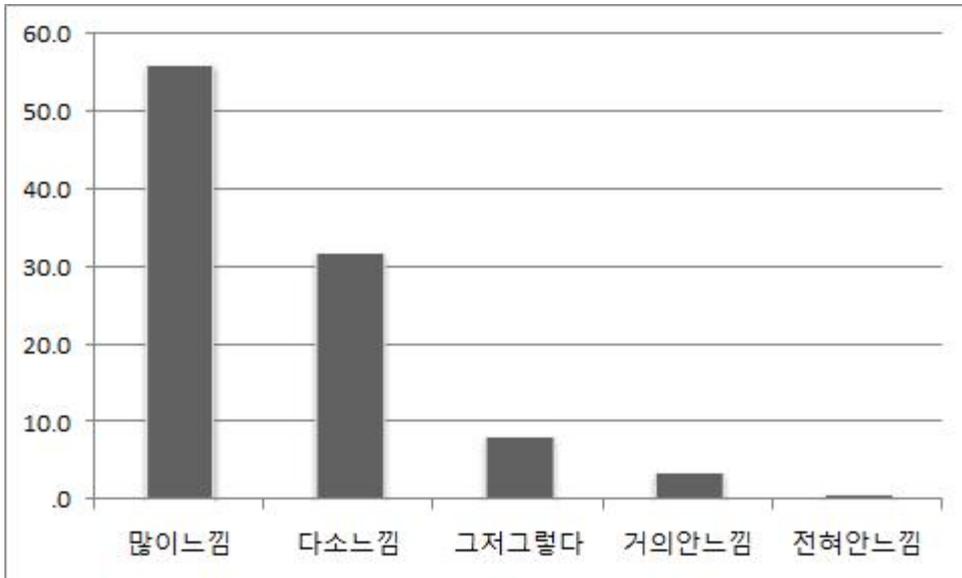
〈그림 3-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정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많이 느낀다는 응답이 83명(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느낀다가 47명(31.8%), 그저 그렇다가 12명(8.1%), 거의 느끼지 않는다가 5명(3.4%),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전국은 많이 느낀다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느낀다가 28.6%, 그저 그렇다가 10.0%, 거의 느끼지 않는다가 5.2%,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약간의 비율 차이만 있고, 동일한 순서를 보였으며, 대전시나 전국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은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대전시 보다는 적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표 3-20>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한계

		빈도	퍼센트	※2012년 전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의 한계	많이 느낀다	83	56.1	55.0
	다소 느낀다	47	31.8	28.6
	그저 그렇다	12	8.1	10.0
	거의 느끼지 않는다	5	3.4	5.2
	전혀 느끼지 않는다	1	0.7	1.2
	합계	148	100.0	100.0



<그림 3-10>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한계

5. 문화예술 정책 및 복지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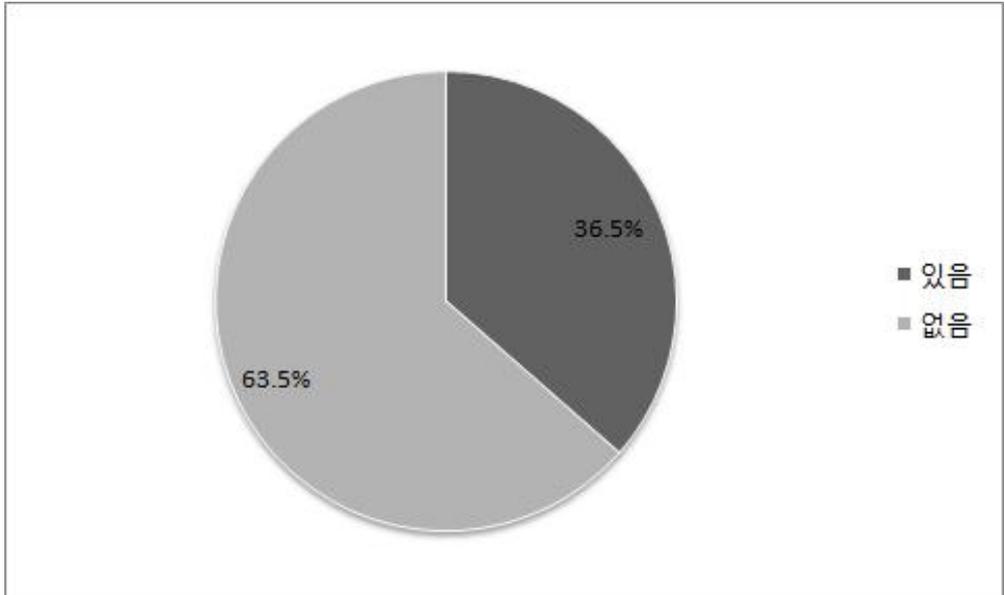
1)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기간 전 3년 동안(2012~2014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공공영역(중앙정부, 지방정부, 문화예술위원회, 대전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는 54명(36.5%)이었으며, 나머지 94명(63.5%)은 전혀 공공영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영역(기업(메세나 포함), 개인후원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는 18명(12.2%)이었으며, 나머지 130명은 전혀 민간영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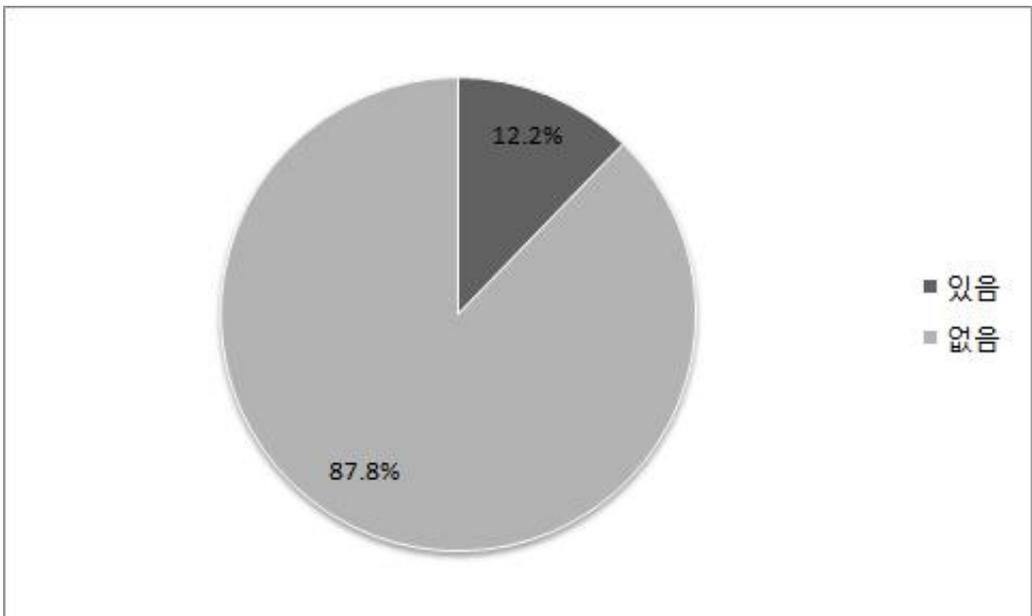
2012년도 문화예술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공공영역의 경우 전국은 43.6%가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대전시의 비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민간영역의 경우 전국은 8.1%로 대전시의 비율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전국에 비해서 공공영역의 지원은 낮고, 민간영역의 지원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21〉 공공 및 민간영역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여부

		빈도	퍼센트	※2012년 전국(%)
공공영역 지원여부	있음	54	36.5	43.6
	없음	94	63.5	
	합계	148	100.0	
민간영역 지원여부	있음	18	12.2	8.1
	없음	130	87.8	
	합계	148	100.0	



<그림 3-11> 공공영역 지원여부



<그림 3-12> 민간영역 지원여부

2) 대전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역점 정책

대전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문화예술정책을 순위별로 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정책은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56명(37.8%)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인(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35명(23.6%)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15명(10.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충과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가 각각 11명(7.4%), 문화예술진흥 관련한 대전시의 조직 및 기능 확대 7명(4.7%),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6명(4.1%), 후속세대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2명(1.4%),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 부여와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이 각각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1순위와 마찬가지로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32명(21.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충이 24명(16.4%),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20명(13.7%), 예술인(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가 16명(11.0%),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의 확대와 후속세대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이 각각 11명(7.5%), 문화예술진흥 관련한 대전시의 조직 및 기능 확대가 9명(6.2%),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이 8명(5.5%),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가 6명(4.1%),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 부여와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이 각각 3명(2.1%), 해외 문화예술 선진국가 견학이 2명(1.4%),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증진이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확충이 19명(13.1%)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이 18명(12.4%),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17명(11.7%),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16명(11.0%), 예술인(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와 후속세대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이 각각 15명(10.3%), 문화예술진흥 관련한 대전시의 조직 및 기능 확대가 14명(9.7%),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와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가 각각 8명(5.5%),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 부여가 5명(3.4%),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과 해외 문화예술 선진국가 견학이 각각 4명(2.8%),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증진과 기타가 각각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역점정책 순위를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전국은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가 24.8%,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10.9%,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확대가 9.1%, 전문예술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강화가 5.6%, 문화예술진흥 관련 조직 및 기능 확대가 4.0%,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와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이 각각 3.4%,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확충이 3.3%, 다른 국가와 문화교류 증진이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비교하면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비율도 유사하였다. 특히 대전시의 역점 정책에서 1순위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지원과 법률 및 제도정비, 그리고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22〉 대전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역점 정책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2012년 전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예술인(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35	23.6	16	11.0	15	10.3	24.8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56	37.8	32	21.9	16	11.0	34.7
문화예술진흥 관련 대전시의 조직 및 기능 확대	7	4.7	9	6.2	14	9.7	4.0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15	10.1	20	13.7	17	11.7	10.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1	0.7	3	2.1	5	3.4	3.4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확충	11	7.4	24	16.4	19	13.1	3.3
전문예술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11	7.4	6	4.1	8	5.5	5.6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확대			11	7.5	8	5.5	9.1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	1	0.7	3	2.1	4	2.8	3.4
다른 국가와 문화교류 증진			1	0.7	1	0.7	0.8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6	4.1	8	5.5	18	12.4	
후속세대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2	1.4	11	7.5	15	10.3	
해외 문화예술 선진국가 견학			2	1.4	4	2.8	
기타	3	2.0			1	0.7	
합계	148	100.0	146	100.0	145	100.0	100.0

3) 대전시의 문화예술 정책 만족도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그저 그렇다가 54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불만족이 51명(34.5%), 매우 불만족이 25명(16.9%), 다소 만족이 16명(10.8%), 매우 만족이 2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

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가 64명(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63명(42.6%),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가 15명(10.1%), 대체로 잘 반영된다가 5명(3.4%), 매우 잘 반영된다가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정책의 만족도를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국은 다소 불만족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30.2%, 매우 불만족이 27.5%, 다소 만족이 6.4%, 매우 만족이 0.5%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비교하면 그저 그렇다와 다소 불만족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이나 대전시 모두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다만 대전시가 전국보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었다.

문화예술정책에 문화예술인의 의사반영 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은 전국이 거의 미반영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40.9%, 전혀 미반영이 8.7%, 대체로 잘 반영이 6.4%, 매우 잘 반영이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비교하면 약간의 비율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전국이나 대전시 모두 문화예술 정책에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대전시 문화예술 정책 만족도

		빈도	퍼센트	※2012년 전국(%)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2	1.4	0.5
	다소 만족	16	10.8	6.4
	그저 그렇다	54	36.5	30.2
	다소 불만족	51	34.5	35.4
	매우 불만족	25	16.9	27.5
	합계	148	100.0	100.0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의사 반영에 대한 인식수준	매우 잘 반영	1	0.7	0.3
	대체로 잘 반영	5	3.4	6.4
	그저 그렇다	63	42.6	40.9
	거의 미반영	64	43.2	43.7
	전혀 미반영	15	10.1	8.7
	합계	148	100.0	100.0

4) 대전시의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

대전시의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응답자들이 제시된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별로 중요도를 비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측정에 제시된 항목은 6개 사업으로 생활안정지원사업(예: 창작준비금 지원, 보육지원 등), 직업역량강화사업(예: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예술환경개선사업(예: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사회보험료지원사업(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등), 예술창작지원사업(예: 창작 및 발표 활동 지원 등), 기타 사업이었다. 응답자들이 위에 제시된 복지증진사업 항목별로 중요도를 비율을 표시하되 전체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하였다. 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 모두 비율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역점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0%로 제시할 수도 있고, 매우 중요한 역점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100%를 표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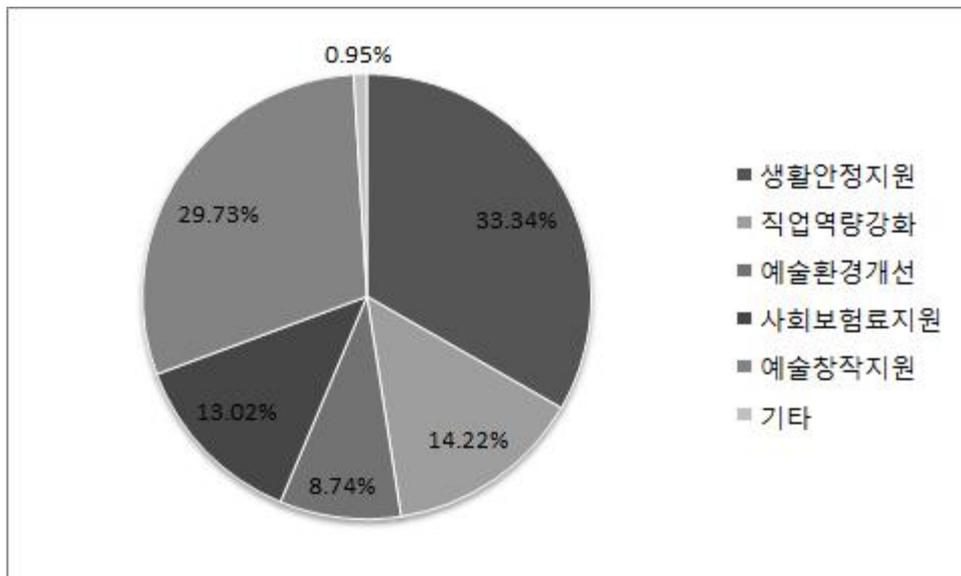
조사 결과,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균 비율이 3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평균 비율도 29.73%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역량강화사업의 평균 비율은 14.22%,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 평균 비율은 13.02%, 예술환경개선사업의 평균 비율은 8.74%, 기타사업의 평균 비율은 0.95%로 나타났다.

위의 응답에서 0%를 표시한 응답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에 최소한의 비율이라도 표시한 응답(이러한 응답은 해당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해당 사업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됨)을 살펴본 결과,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응답자가 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 10%에서 100%의 범위에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창작지원사업에 136명이 응답하여 최소 5%에서 60%의 범위,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113명이 응답하여 최소 2%에서 50%의 범위, 직업역량강화사업에 110명 응답하여 최소 5%에서 100%의 범위, 예술환경개선사업은 86명이 응답하여 최소 3%에서 최대 50%의 범위였으며, 기타 사업에 6명이 응답하여 최소 10%

에서 80%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대전시의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
(단위: %)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생활안정지원사업	148 (141)	0 (10)	100	33.34	17.46
직업역량강화사업	148 (110)	0 (5)	100	14.22	14.39
예술환경개선사업	148 (86)	0 (3)	50	8.74	10.73
사회보험료지원사업	148 (113)	0 (2)	50	13.02	10.80
예술창작지원사업	148 (136)	0 (5)	60	29.73	16.26
기타 사업	148 (6)	0 (10)	80	0.95	6.93



<그림 3-13>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사업

6. 생활수준 및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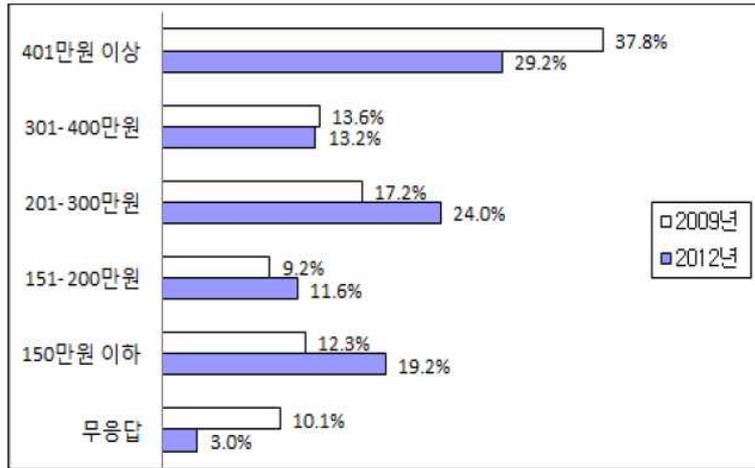
1) 생활수준

응답자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 전체 월평균 수입과 응답자의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월 평균 기타 수입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가구의 전체 월 평균 수입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였으며, 평균값은 월 평균 320.74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월 평균 수입은 최소 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였으며, 평균값은 월 평균 97.06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지출한 월 평균 지출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였으며, 평균값은 월 평균 77.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기타 수입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950만원이었으며, 평균값은 월 평균 141.3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25〉 생활수준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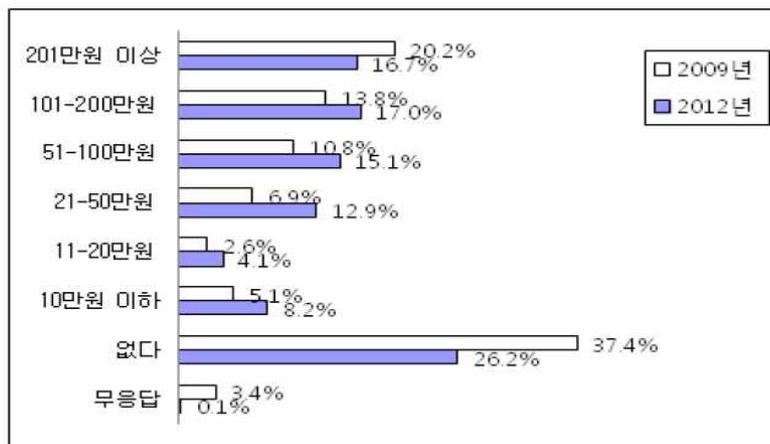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가구 전체 월 평균 수입	143	30	4,000	320.74	492.79
개인 문화예술 활동 월 평균 수입	109	0	700	97.06	102.21
개인 문화예술 활동 월 평균 지출	143	5	2,000	77.96	172.62
개인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월 평균 기타 수입	99	10	950	141.31	138.16

2012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문화예술가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401만원 이상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1~300만원이 24.0%, 150만원 이하가 19.2%, 201~400만원이 13.2%, 151~200만원이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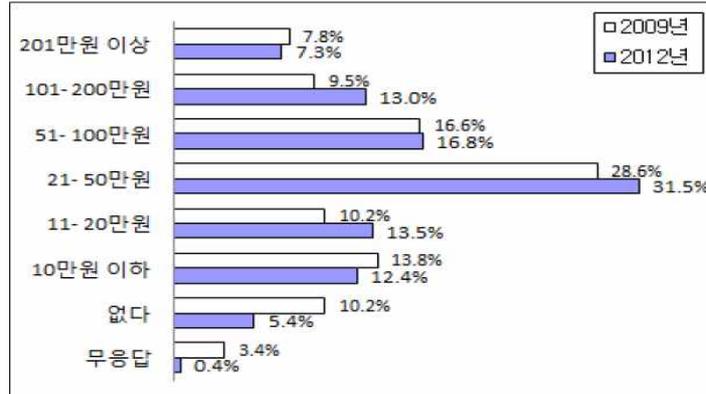
<그림 3-14> 2012년 전국 문화예술가 가구의 월평균 수입

2012년 전국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은 101~200만원이 1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1만원 이상이 16.7%, 51~100만원이 15.1%, 21~50만원이 12.9%, 10만원 이하가 8.2%, 11~20만원이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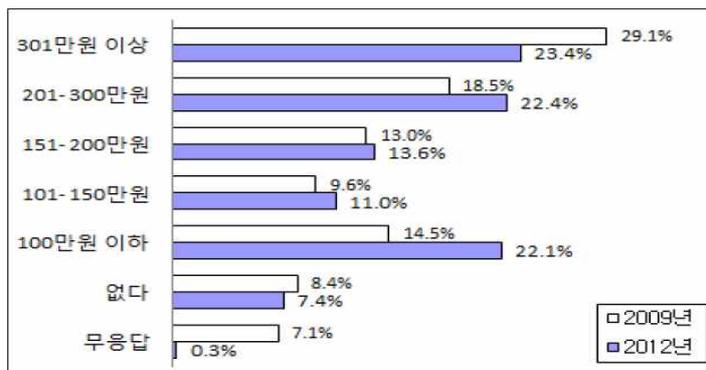
<그림 3-15> 2012년 전국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2012년 전국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은 21~50만원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1~100만원이 16.8%, 11~20만원이 13.5%, 101~200만원이 13.0%, 10만원 이하가 12.4%, 201만원 이상이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2012년 전국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

2012년 전국 문화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예술 활동이 아닌 것 포함)은 301만원 이상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1~300만원이 22.4%, 100만원 이하가 22.1%, 151~200만원이 13.6%, 101~150만원이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대전시의 문화예술 활동 월평균 수입 97.06만원과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월평균 기타 수입 141.31만원을 합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7> 2012년 전국 문화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

〈표 3-26〉 삶의 만족도

		빈도	퍼센트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전혀 아니다	3	2.0
	아니다	28	18.9
	약간 아니다	10	6.8
	중간이다	30	20.3
	약간 그렇다	32	21.6
	그렇다	36	24.3
	매우 그렇다	9	6.1
	합계	148	100.0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전혀 아니다	9	6.1
	아니다	25	16.9
	약간 아니다	26	17.6
	중간이다	40	27.0
	약간 그렇다	20	13.5
	그렇다	25	16.9
	매우 그렇다	3	2.0
	합계	148	100.0
나는 나의 삶에 만족 한다	전혀 아니다	1	0.7
	아니다	15	10.1
	약간 아니다	10	6.8
	중간이다	29	19.6
	약간 그렇다	28	18.9
	그렇다	50	33.8
	매우 그렇다	15	10.1
	합계	148	100.0
나는 지금껏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전혀 아니다	3	2.0
	아니다	20	13.5
	약간 아니다	20	13.5
	중간이다	26	17.6
	약간 그렇다	37	25.0
	그렇다	36	24.3
	매우 그렇다	6	4.1
	합계	148	100.0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전혀 아니다	13	8.8
	아니다	19	12.8
	약간 아니다	10	6.8
	중간이다	22	14.9
	약간 그렇다	23	15.5
	그렇다	37	25.0
	매우 그렇다	24	16.2
	합계	148	100.0

2) 삶의 만족도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26>과 같다.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 5문항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평균은 최소 1.8점에서 최대 7점까지의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값은 4.41점으로 나타났다.

<표 3-27> 삶의 만족도 평균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평균	148	1.80	7.00	4.41	1.29

제 4 장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현황 및 요구

제1절 예술인 복지 정책의 현황

제2절 대전 지역의 예술인 복지 정책

제 4 장 예술인 복지 정책 현황 및 요구

제1절 예술인 복지 정책의 현황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 사업 현황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기조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으로 표기)은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예술인 복지법 제 8조).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예술인 복지 증진을 기본 미션으로 하여, 이를 위해 예술인의 직업안정, 사회보장 확대, 직업안정과 예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재단의 주요 업무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현재까지 조사 연구 사업을 비롯해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증명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의 기본자격요건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증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원신청자격 :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최근 일정 기간의 ①예술활동 혹은 ②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한 예술인



〈그림 4-1〉 예술활동증명 절차(예술활동증명 심의 추진 체계)

2) 주요 사업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2013년도까지는 크게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 으로 구분해 진행되었다. 이후 2014년도부터는 크게 10개 주요 사업으로 확장 개편되어 진행되고 있다.

(1) 2013년도까지의 사업

①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

창작 준비 기간 중에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이나 연계 활동을 조건으로 창작준비금을 지급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전환기 지원,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등의 개별사업들이 있으며, 각 사업 당 5개월 동안 월 60만원 씩 지원된다.

②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재교육이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술인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좌형 교육과 맞춤형 강좌,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개별 사업들이 진행된다.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과정, 중간예술인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예술매개 사회갈등조정자 양성과정 등의 ‘강좌형 교육’ 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별도로 훈련수당이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은 최대 1백만원까지 교육비가 지급된다.

(2) 2014년도 이후

① 창작 준비금 지원(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급여 미수급 상태이며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200% 이하,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지원금을 1인 300만원씩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가운데 만 70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예술활동경력이 증빙 가능한 예술인에게 1인 200만원씩 지원.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급여 미수급 예술인.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200% 이하.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이 자격요건.

②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 지원대상 : 24개월 ~ 10세 미만의 공연예술인 자녀

○ 이용시간 : 월요일 휴무, 화~금요일 13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23시까지, 일요일 9시부터 20시까지

○ 프로그램 : 보육, 연극, 미술, 음악, 댄스, 영어뮤지컬 및 학습지도

○ 운영인력 : 센터장 1인, 책임교사 1인, 교사 2인, 보조인력 1인

○ 수용인원 : 1일 최대 20명

③ 예술인 파견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2014 파견예술인지원 사업 참여자, 월 1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예술인도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과 파견 예술인으로 구분해 예술일자리 개발

및 매칭 지원, 파견예술인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

<표 4-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구분	모집 인원	활동 기간	활동시간	지원금액	비고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40명	3월~10월 (8개월)	월 10일 이상	월 150만원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 (교통비, 재료비, 회의비 등)
파견 예술인	350명	5월~10월 (6개월)	월 10일 이상 (30시간 이상)	월 120만원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 (교통비, 재료비, 회의비 등)

④ 예술인 교육이용권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 지원 (참여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2014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자,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등 중복수혜 불가)

○ 지원심의기준 : 행정심의(학습계획서 평가, ‘예술활동증명’ 승인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⑤ 예술인 신문고

○ 지원대상 :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 용
사전상담 신고/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		
사실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내용 확인, 기초 사실관계 조사, 자료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개입,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위원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보고서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		
시장명령	문화체육관광부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장명령 부과 ※ 종류: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장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1인당 최대 2백만 원) - 월 소득 260만 원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 - 월 소득 260만 원 이상인 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 검토

〈그림 4-2〉 예술인 신고 내용 및 지원 절차

⑥ 예술인 상담·컨설팅 운영

○ 지원대상 : 예술 활동과 관련된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저작권, 계약 등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 협·단체, 문화예술기관.

○ 지원내용 :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

권, 법률 등의 상담·컨설팅 지원.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 단체신청 및 「예술인법률상담카페」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

⑦ 예술인 심리상담

○ 지원대상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불균형으로 심리적·정신적·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에 예술인 심리상담 및 검사 비용 전액 지원

<표 4-2>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검사 · 진단검사 · 종합인지기능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상담·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상담·치유 · 대인관계 상담·치유 · 경계문제 상담·치유 · 생애위기사건(이혼, 퇴직, 가족의 사망, 건강문제 등) · 진로 및 직장문제 상담·치유 · 부부 및 가족 상담·치유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집단상담,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불안, 사회공포증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 스트레스 대처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 대인관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예방 및 위기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프로그램(safeTALK) · 위기개입 프로그램(ASIST) 등

⑧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기관.

○ 지원대상 :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방송, 영화, 공연예술 분야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 지원(월 보수 140만원 기준, 약 1000명 지원 예정.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후 지원)

○ 지원심의기준 : 행정심의기준(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 이행 여부 확인,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 적합성 내부심의)

⑨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현업 종사자(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관련 협·단체,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부서(취업지원팀, 학생 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 추진체계(운영형태) :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 협·단체·유관기관 등 요청 시 해당 분야 예술인 맞춤형 특강을 개최 지원하는 「찾아가는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 예비예술인 대상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지원

<표 4-3>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내용

분야	내용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전문가의 강의 진행 - 표준계약서 소개 및 활용사례, 계약 시 유의점 등
예비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예술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례를 공유 - 예술계의 법적환경 이해 : 문화예술 관련법과 예술인의 권리 - 저작권 기본개념 및 계약법 일반 - 표준계약서의 이해 : 장르별/직군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 현장사례 공유 : 예술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 문제해결 방법

⑩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였고, 가입신청일 현재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2.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 사업의 성과와 한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크게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 으로 구분할 때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3년까지 총 3,768명에게 지원하였고,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 을 통해서 1,831명에게 지원하였다.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 지원’ 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장르는 미술(42.6%)였고, 문학(20.3%), 영화(10.1%)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39.6%), 40대가 (22.1%), 20대가 (18.1%)였다.

2014년에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오픈하였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설립 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예술인조합과 예술인 기금 조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예술활동증명과 계약제도 등에 집중된 사업방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신진 예술인과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직후에 이뤄지던 대전문화재단과의 사업 공조도 2014년에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대전 지역의 예술인 복지 정책

1. 대전 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정책

1) 대전 문화재단의 예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기조

대전문화재단은 2009년 설립된 대전시 출연기관으로, 대전시의 문화정책을 집행하고, 문화바우처 등 전국규모 문화사업의 지역주관처를 운영해왔다. 단순히 집행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획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문화수요자와 문화생산자, 문화유통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별도의 중장기적 사업방향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다만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꼽으면 예술 창작 지원, 차세대 artiStar,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1) 예술 창작 지원

○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대전광역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다른 시·도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기획전시를 하고자 하는 등록된 사설 갤러리 대표에게 건별 300만~2,000만 원씩 지원

<표 4-4>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단위 : 만원)

지원주체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규모 (건별)
전문문화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집 발간	개인·공동 창작집 발간	300~1,000
	시각예술 (미술, 서예, 사진)	전시	전시회 개최	300~1,000
	공연예술 (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공연	공연 활동	300~2,000
	다원예술	전시· 공연	복합장르, 탈장르, 실험예술, 장르간·학제간 융복합(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 등)의 전시·공연 활동	300~1,000
	예술일반	공연	비상업적 대중예술 활동(팝스 오케스트라, 인디밴드 등)의 공연활동	300~1,000

(2) 차세대 artiStar지원

○ 지원신청자격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2015. 1. 1 기준 만 35세 이하의 전문 예술가(초·중·고·대학생 제외)

○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의(서류-신청자격 부합여부), 2차 전문가심의(전문예술 활동실적, 활동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성장가능성, 기여도와 파급효과), 3차 실기 심의(문학-인터뷰, 시각-프레젠테이션, 공연-오디션)

<표 4-5> 차세대 artiStar 지원 자격

분야	비고	
문학예술(시·시조·소설·희곡)	신춘문예 당선이나 문예지 추천을 받은 자 중 최근 2년 간 운문 5편, 산문 1편 이상 전문문학지에 발표한 자	
시각예술(미술·서예·사진)	최근 2년간 1회 이상 개인 전시회(학위청구전 제외)를 개최하고 3회 이상 전시에 참가한 자	
공연예술	음악	최근 2년간 1회 이상 음악회(학위청구공연 제외)를 개최하고 3회 이상 공연에 참가한 자
	전통<국악>	최근 2년간 공연의 조연급 이상으로 2회 이상 출연하였거나 안무(연출)로 1회 이상 활동한 자로서 지역 단체의 공연에 5회 이상 출연한 자
	무용	
	연극	

○ 지원규모 : 1인당 1차년도 500만원, 2차년도 500만~1,500만 원

<표 4-6> 차세대 artiStar 지원 규모

(단위 : 만원)

분야	지원유형	1차년도		2차년도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범위	지원 금액	
문학예술 (시·시조·소설·희곡)	발간	창작역량강화비 지원(자료구입비, 학술연구활동비, 연수비, 현장체험비 등)	500	개인 창작집 발간	500~1,500	
시각예술 (미술·서예·사진)	전시	개인전시회 지원(자료구입비, 학술연구활동비, 연수비, 현장체험비 등)	500	전시활동지원		
공연예술	음악	기악, 성악	개인공연 1회 지원(자료구입비, 학술연구활동비, 연수비, 현장체험비 등)	500		협연 또는 출연기회제공
	전통 <국악>	국악, 성악, 기악				
	무용	안무·무용	안무, 출연활동 지원연출, 연기활동 지원(자료구입비, 학술연구활동비, 연수비, 현장체험비 등)	500	안무/연출, 출연기회제공	
	연극	연출·연기				

(3)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지원신청자격 :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전문문화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단체와 대표자의 주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70% 이상이 대전광역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문화예술 단체, Out bound 교류사업의 경우 사업 정산 시 현지 보도자료 및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단체(개인)

○ 지원대상사업 :

- 해외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제작 및 발표 : 해외 유명 기획자,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등과 협력/공동 제작하는 사업

-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참가 활동 :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작가 낭독회 등/ 세계의 유명 비엔날레·페스티벌 참여 등

- 국내(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 전시, 공연, 페스티벌, 비엔날레 등

○ 지원규모/항목 : 건별 250만~2,000만 원씩 항공료, 체재비, 임차비 등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4)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정규사업(정기전시회) 실적이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 대전 지역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기획자, 작가, 창작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각예술단체

○ 지원규모/항목

1개 레지던스 시설당 2,000만 ~ 5,000만원

창작 활동 프로그램비, 기획비, 교육프로그램비 등 기획자 인건비(1인에 한하여 최대 월 120만 원이며, 보조 기획자는 불인정),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재료) 및 발표 경비, 작가 창작 활동비(월 30만원 이내), 국내·외 교류 및 지역민 연계 교육 관련 경비, 커뮤니티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대전 테마 예술창작센터 운영

대전문화재단의 사업 중 ‘테마 예술창작센터 운영’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술인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의 내용에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 테마 예술창작센터는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전시공간, 창작공간을 아우르는 훌륭한 문화예술 소통 공간의 가능성을 지닌다. 현재 문화재단의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확대육성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다음은 대전 테마 예술창작센터의 거주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다.

○ 지원자격 :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순수 시각예술가, 팀의 경우 1명 이상이 시각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함. 팀의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에 따름. 2년 연속 선정 및 거주한 입주예술가는 1년 후부터 재 지원 가능.

○ 입주 기간 : 국내 12개월, 국외 최소 3개월

- 예술가가 비자 문제를 자체 해결할 시 최대 4분기(12개월)까지 선택 및 체류 가능하고, 2분기(6개월) 이상 선택 시 입주 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지원 사항 : 개인 스튜디오 및 장비 지원(팀의 경우 팀당 1실 배정, 공간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면제),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전시참여 기회 제공(창작센터 전시 참여 시 작품촬영 및 도록 발간), 창작센터 전시 참여 시 작품제작비 일부 지원, 기타 프로그램 참여 시 경비 지원

2. 대전시 복지정책에 대한 예술인들의 요구수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 가운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정책과 대전문화재단의 사업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에 관심이 적었다.

문화재단 사업의 공모와 정산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나 창작지원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음에도 복잡한 공모·정산 절차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보다는, 처음부터 공모사업이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라 짐작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정책 인식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같은 문화예술인들이라 하더라도 분야별로 요구수준과 만족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미술, 문학, 사진 등 개인이 홀로 작업을 하는 분야와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등 집

단 창작 분야와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대체로 복지정책을 입안하더라도 문화예술인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것보다는 현재의 예술활동증명보다는 느슨한 자격요건을 두고, 이에 부합되면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들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현재 대전시의 예술활동증명은 실질적 혜택이 없어 불만스러워했는데, 다른 분야의 공연이나 전시를 프리패스로 볼 수 있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창작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좀 더 낮은 수준의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청년층을 비롯한 신진 문화예술인들의 진입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중요하다고 현장의 예술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제 5 장

지역 예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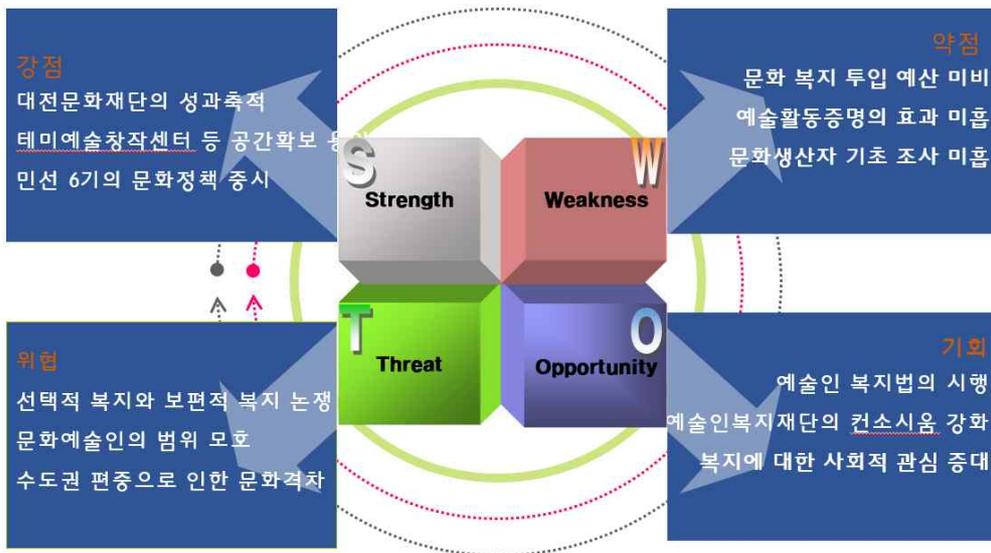
제1절 지역 예술인의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제2절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의 과제

제 5 장 지역 예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

지역 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다음과 같은 여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전문화재단이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한 노하우를 강점으로 지니고 있으며,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유휴공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의 효과가 미흡하고, 문화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낮다.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술인 복지법도 시행되는 등 예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기회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가 약화될 수 있는 위협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그림 5-1>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분석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 과제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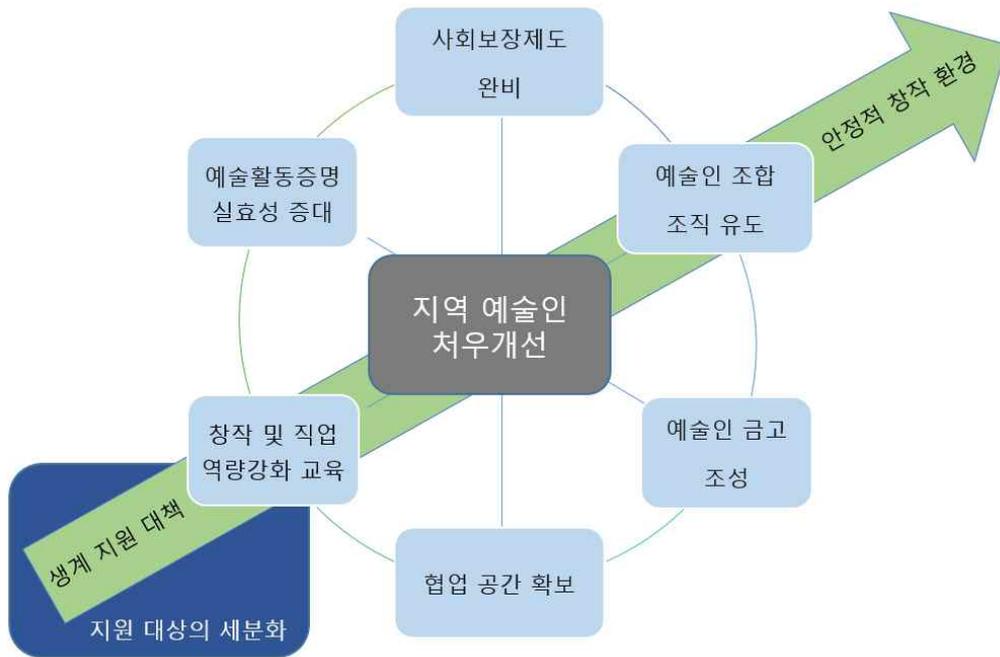


<그림 5-2> Cross-Swot 분석을 통한 주요 추진전략 도출

2.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

SWOT 분석과 Cross-Swot 전략에 따르면 대전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예술인 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을 명확한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르별 예술인들의 특성 차이와 개인 창작자/집단창작자의 특성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교사 투입확대 등 직접적 생계 지원 대책들과 사회보장제도도 확대해야 하지만,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 틀은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의

실효성을 높여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교육을 기획하거나 지원하며, 예술인들의 공동창작 공간을 확충한다. 궁극적으로는 예술인 금고와 예술인 조합이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예술인들이 자조적 공동체를 형성해 수동적으로 복지정책에 기대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창조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게 하는 필수조건이다.



<그림 5-3> 지역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3. 지역예술인 복지 정책의 과제

위와 같은 전략 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카드의 도입

예술인 복지카드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논의되던 것으로 이충직과 김로유는 영화인 자격 증명과 함께 예술인 복지카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술인 복지카드의 도입은 프랑스의 ‘앵페르미땅 제도’의 취지를 가져와 예술인들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향후 창작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와 문화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술인 복지카드의 구체적 혜택으로는

1. 카드 소지자에게 문화 예술 공간 및 영화관 공연, 전시 입장을 무료로 허용.
2.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심사 자격을 완화.
3. 멘토링 제도 (멘티) 참여 기회 우선권.
4. 타 직종 전환 시 신입 입사기준 나이와 경력을 예술가들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충직·김로유, 2014).

2) 공동 작업 공간 확충

최근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의 생성이 두드러지는데, 이 가운데 협업 공간(co-working space)을 창업 아이템으로 내세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협업 공간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공간적 거점이 될 수 있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도 있는 많은 쓰임새를 지닌다. 대전의 유휴 공간을 직접 찾아 조성할 수도 있고, 협업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예술인 협동조합을 찾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5-4〉 협업공간 ‘사이’ 내부 모습(충남 천안시 소재)

3) 예술인 조합 및 예술복지 기금 조성

예술복지 기금은 예술인복지금고라는 이름으로 2014년 설립되는 것으로 논의되던 중 문예진흥기금에 통합되어 증액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74년 출범한 한국 언론인금고와 1969년 시작된 한국출판금고를 벤치마킹한 예술인 금고는 소액신용대출 및 주택자금대출의 적정성, 금융권에 관한 위탁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전권에서 자체적으로 예술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예술인 조합의 결성과 연계시킨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예술인 취업지원 사업 특성화

예술인 취업지원 사업은 본래 예술인 복지재단의 주력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과거 대전문화재단과 예술인복지재단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했던 전례를 보면 프로그램 기획을 예술인복지재단이 담당해 지역실정에 밀착된 강사를 선정하는 데 약간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취업을 기대하고 왔던 많은 수강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도 과제이다. 취업지원보다는 예술분야의 직무능력강화 훈련으로 내용을 수정해 대전문화재단에서 직접 기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김나뱃(2013), 예술가들이 원하는 예술인 복지법은(시민과세계 제22호)
- 김병덕(2014),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태완 외(2008), 영화인복지정책 효율화 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보고서
- 김태완(2009), 예술인복지모델 세부설계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박영정(2006), 예술인정책체계화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조원 외(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구보고서
- 유가원(2013), 국내외 예술인복지제도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무용가 복지방향에 관한 연구(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1권 3호)
- 이동연(2013), 예술과 노동 사이(시민과세계 제22호)
- 이선엽(2013), 예술인 복지의 전망(경남발전 126호)
- 이영리(2012),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플랫폼 통권35호)
- 이충직(2014), 영화 창작인 복지 개선 방향(한국콘텐츠학회 Vol.13 No.5)
- 전병태(2010),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정민 외(2013),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한국콘텐츠학회 Vol.14 No.11)
- 허은광(2012), 예술인 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플랫폼 통권35호)

부 록

부록 1. 조사 설문지

부록 2. 예술인복지법 및 시행령

부록 3.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부록 1. 조사 설문지

ID				
----	--	--	--	--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 증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대전지역 예술인들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설문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누락되는 질문 없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상헌(연구 책임자)

대전발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임재현(사회복지학 박사)

- 연락처 : 301-82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대전발전연구원

(Tel) 042- 530-3500

1. 직업 및 직장

1. 귀하는 현재 전업 예술가입니까?

- ① 예 (☞ 문항 3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항 2번에 꼭 응답바람)

2. (전업 예술가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전업 예술가가 아니라면 다음 중 어떤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① 고위관리직(기업체경영주, 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②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언론인, 프로그래머)
③ 준전문직(건축도안사, 컴퓨터보조원, 임상병리사, 준교사, 운동선수 등)
④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전화상담원 등)
⑤ 서비스/판매직
⑥ 농업, 어업, 임업
⑦ 기능직(광원, 건축관련 기능직, 정비원, 세공원 등)
⑧ 장치 및 기계 관련직(장치 조작용, 기계 조작용, 운전기사 등)
⑨ 단순노무직(환경미화원, 아파트관리원, 노무자 등)
⑩ 기타 _____

3. 귀하의 현재 취업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고용주 ② 자유전문직(프리랜서)
③ 정규 피고용직(정규직) ④ 임시 피고용직(계약직)
⑤ 기타 _____

4. 귀하의 현 직업은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분야와 일치합니까?

- ① 전적으로 일치한다. ② 대체로 일치한다. ③ 반반이다
④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⑤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⑥ 비해당(무직/은퇴)

5. 귀하는 현재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 ① 작성했음 ② 작성하지 않았음(☞ 문항 5-1로 이동)
- ③ 해당 없음(문화예술 활동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 자유전문직 포함)

5-1. (문항 5의 ②에 응답한 경우에만)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잘 몰라서
- ② 직장에서 일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 ③ 원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 ④ 일반 고용계약서와 차이가 없어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⑤ 기타 _____

6. 귀하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어떠한가요?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 ③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족의 보험 활용 등)

7. 귀하의 국민연금 가입형태는 어떠한가요?

-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 ③ 특수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 ④ 연금수급자 ⑤ 납부유예(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어서 등)

8.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됨(☞ 문항 8-1로 이동) ② 가입되어 있지 않음
- ③ 잘 모르겠음

8-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예술인 산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예술인 산재보험 ② 일반 직장의 산재보험
- ③ 잘 모르겠음

9.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됨
- ② 가입되어 있지 않음
- ③ 잘 모르겠음

1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귀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지원받고 있음
- ② 지원받고 있지 않음(☞ 문항 10-1로 이동)
- ③ 잘 모르겠음

10-1. (문항 10의 ②에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예술인 사회보험에 대하여 잘 몰라서
- ② 본인이 예술인활동증명을 하지 못해서
- ③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서
- ④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 ⑤ 사업장(또는 고용주)에서 지원신청을 꺼려해서
- ⑥ 지원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 ⑦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아서
- ⑧ 본인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서
- ⑨ 기타 _____

5.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적음 ←—————→ 매우 많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6.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으로 3개까지만 응답 가능, 우선순위 아님)

- 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 ② 행정 및 서류처리 등의 업무량 과다
- ③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
- ④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수준
- ⑤ 감정노동 스트레스
- ⑥ 차별대우(성, 지역, 학력, 장애 등)
- ⑦ 일·가정양립문제(자녀 보육 및 교육, 가사 등)
- ⑧ 업무상 재해 위험
- ⑨ 역량개발의 기회부족
- ⑩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⑪ 조직문화 적응의 어려움
- ⑫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
- ⑬ 기타 (자세히: _____)

Ⅲ. 문화예술 활동 여건

1. 귀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평가 및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다소 높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낮다 ⑤ 매우 낮다
2. 귀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발표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풍족하다 ② 다소 풍족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외부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하다 ② 다소 심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4.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풍족하다 ② 다소 풍족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5. 귀하는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풍족하다 ② 다소 풍족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6.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① 많이 느낀다 ② 다소 느낀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IV. 문화예술 정책 및 복지증진

1. 귀하는 지난 3년 동안(2012~2014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먼저 지원받은 여부에 V체크해 주시고, 지원 받은 적이 있다면 3년 동안의 지원받은 총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지원여부	3년 동안 지원받은 총액 (지원받은 적 있다면)
1) 공공영역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화예술위원회, 대전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2) 민간영역 (기업(메세나 포함), 개인후원자 등)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2. 귀하는 대전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3순위까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예술인(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 ②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 ③ 문화예술진흥 관련한 대전시의 조직 및 기능 확대
- ④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 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 부여
- ⑥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충
- ⑦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⑧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⑨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
- ⑩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증진
- ⑪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 ⑫ 후속세대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⑬ 해외 문화예술 선진국가 견학

⑭ 기타 (자세히:)

3. 귀하는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그저 그렇다
-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귀하는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반영된다. ② 대체로 잘 반영된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⑤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5. 귀하는 대전시에서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문항의 합이 100%가 되도록 각 문항의 비율을 환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예시	비율
① 생활안정지원(예: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	50%	%
② 직업역량강화(예: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20%	%
③ 예술환경개선(예: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0%	%
④ 사회보험료지원(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	30%	%
⑤ 예술창작지원(예: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0%	%
⑥ 기타()	0%	%
전체 합계	100%	100%

※ 대전시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빈칸에 귀하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 주십시오.

V. 생활수준 및 만족도

※ 다음은 귀하의 월 평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간 총 수입 및 지출을 월 평균으로 계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가구 전체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2. 귀하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3. 귀하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월 평균 지출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4. 귀하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외한 월 평균 기타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5. 다음은 귀하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되는 번호에 V체크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귀하의 최종학교의 전공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와 일치합니까?
① 전적으로 일치한다. ② 대체로 일치한다. ③ 반반이다
④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⑤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⑥ 비해당(무직/은퇴)

7. 귀하의 현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⑥ 대전시 외

8. 귀하가 문화예술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⑥ 대전시 외

9.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사실혼 ⑥ 기타

- 9-1. (현재 배우자가 있는 분만 응답) 귀하의 가구 수입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남녀 맞벌이 ② 남성 홀벌이 ③ 여성 홀벌이
④ 본인·배우자 이외의 가족수입

※ 귀하의 기타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질문 문항, 응답범주 등), 본 연구과제의 문화예술인 의견수렴과정(공청회, 토론회 등), 본 연구과제 외의 문화예술 관련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부록 2.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4.3.31.] [법률 제12136호, 2013.12.30.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2-3704-95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12.30.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

·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신설 2013.12.30.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12.30. >

-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30. >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2136호, 2013.12.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호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2장 신 청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 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 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제5조(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대하여 표본 검증을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8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

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정기준

제10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1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제13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 ③ ‘1장’ 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 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 ④ ‘1회’ 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 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 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 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 란 ‘관련 잡지 등’ 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제15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 이란 ‘스태프(제작진)’ 에 해당하는 자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 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 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자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6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잡지 등을 말한다.
-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변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9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

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운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1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운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운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팬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4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5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 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6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8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확인을 근거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29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금지행위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자료 하되, 만화 분야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만화 작품 1편 제작에의 참여 기간이 최소 8개월이 되어야 3분의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효 력

제3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4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책연구보고서 2015-06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5년 4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